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2395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구합50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11.
판 결 선 고	2020. 1.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2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1,966,238원 부과처분 중 3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7,560,433원 부과처분 중 151,4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개인지방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설령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더라도 그 가산세의 한도는 명문에서 규정한대로 1억 원을 한도로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야 하므로 피고 [redacted]구청장의 법인지방소득세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2

산세 부과처분 중 1,514,211원[1]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쟁점 지방세법 제103조의30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쟁점 지방세법 제86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쟁점 지방세법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개정 지방세법이 소급하여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이 법인세 가산세액의 10%를 한도로 정해지는데 반하여, 쟁점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에는 그 한도가 정해진 바 없어 법인세 가산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쟁점 지방세법에 있어서 가산세 한도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구 지방세법 및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비하여 쟁점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입법취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성격 및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성질 등을 종합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한도는 법인세 가산

1)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한도인 1억 원에 피고 부평구청장의 안분비율인 1.514211%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2

세 한도액의 10%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한도액은 법인세 가산세의 한도액인 1억 원이 아닌 법인세 가산세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이고, 여기에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안분비율 1.514211%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redacted]구청장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